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45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정춘생·조 국·신장식

김재원 · 김선민 · 김준형

서왕진 · 차규근 · 황운하

박은정 · 강경숙 · 김종민

이해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고,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제한적이며, 유효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 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함(안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법률 제18545호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1조원"을 "2조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로 한다.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부터 2033회계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은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2025회계연도에는 1조1천억원
- 2. 2026회계연도에는 1조2천억원

- 3. 2027회계연도에는 1조3천억원
- 4. 2028회계연도에는 1조4천억원
- 5. 2029회계연도에는 1조5천억원
- 6. 2030회계연도에는 1조6천억원
- 7. 2031회계연도에는 1조7천억원
- 8. 2032회계연도에는 1조8천억원
- 9. 2033회계연도에는 1조9천억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u>1조원</u>	1 <u>2</u> 조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생 략)	구분과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②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	
리한다.	
1. <u>제24조제1항제1호</u> 의 용도로	1. <u>제24조제1항제1호·제3호</u>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
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1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
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2. (생략)

② ~ ④ (생 략)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생 략)

②제22조부터제29조까지의개정규정은이 법시행일부터203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가
제24조제1항제1호 • 제3호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

<삭 제>

음)